이 유

1.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의 주장

- 2021년 12월 31일 이사해서 2022년 1월 7일 밤 11시부터 두드림, 바닥에 아렁굴리기, 탬버린 종류 바닥에 던지기, 최근에는 메탈 음악 소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서울외고 2학년 재학 중인 아들이 이상증세를 보이고, 중요한 시기에 공부를 아예 못해서(집중 할 수도 없음) 현재 할머니 댁에서 살고 있는데, 한 번 노는데 습관 들더니 지금은 대학은 가서 뭐하냐고 하고 있는데 정말 머리 아픕니다.
- 16살 딸은 예고를 목표로 중학교 중퇴 후 플롯 연습을 해야 하는데, 1월 4일경 딱 한 번 불었는데 윗집 항의로 인해 낮 시간에 연습조차 못해 진학이 걱정됩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우리집에서 플롯 소리 난다고 계속 항의, 차라리 연습 한 번 하고 항의 받지 연습하지도 않았는데 항의받으니 가슴만 답답합니다.
- 저는 즐거워야할 퇴근시간이 집이 가까워질수록 끔찍하다는 생각부터 들고, 집이 편한 휴식처가 아니고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 평소 동네 사람들과 어울리기 좋아하는 와이프는 낮 시간에 손님만 왔다하면 어떻게 아는지 경찰 출동시켜 조용히 하라합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은 이렇게는 도저히 못살겠어서 22년 2월8일경 이사온지 50일 만에 다른 곳으로 이사 결정했고, 겨우겨우 살만한 곳을 계약 해서 22년 6월 30일 이사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우리 집에서 새벽에 살림을 한다. 일부러 쿵쿵소음을 낸다. 이사와서 한 번 불었던 플롯을 시도때도 없이 분다. CCTV 설치해서 소음나는 시간 알려주면 그 시간에 우리 가족이 뭐했는지 보여주겠다고 해도 싫다고 합니다.

- 한 번은 일요일 주말에 가족 모두 외출하고 11시쯤 귀가했는데 피신청인 세대에서 우리집 시끄럽다고 신고해서 경찰이 우리집 초인종누르고 있더군요. 우리 가족 모두 외출했다는 말을 안민길래 우리가어디갔다 왔는지 블랙박스 칩 빼서 드리겠다고 까지 했는데 당연히거절하더군요. 전에 살던 사람도 피신청인 세대 때문에 이사갔다는말도 그때 출동했던 경찰이 말씀해서 알게됐습니다. 또 한 번은 밤12시경에 엄청 두드리길래 제가 경찰신고했는데, 마침 그 소리를 직접들은 경찰이 피신청인 세대에 그러지 말라고 경고한 적도 있습니다.
- 전에 살던 사람에게 그동안 어떻게 당했는지 알려달라 했지만, 조언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저희가 전에 살던 사람처럼 아무렇지 않게 이사가면 또 다음 사람이 받을 고통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물론 충간소음 때문에 이사간다고 고지는 했습니다만 법 무서운 줄 모르고 타인을 괴롭히는 인생 막장인 깡패도 아니고, 일반인이 어떻게 이럴수 있는지 의아합니다. 무거운 처벌을 통해 법 무서움을 깨닫게 해서 더 이상 피해보는 사람이 없도록 해주세요.
- 앞으로 인생 진로에 더없이 중요한 시기에 이런 황당한 일을 겪고 있는 아이들과 피신청인 세대 때문에 가족 모두 극심한 스트레스, 이 사비용, 이에 대한 배상을 마땅히 받아야 합니다. 소음을 고의로 낸 다는 말과 칼부림 날 수 있다는 협박내용 녹취있습니다.

나.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2021년 12월 31일 이사를 오기 3일 전부터 청소를 한다는 이유로 아줌마 3~4명들과 함께 비워져 있는 집에 낮 시간쯤방문해서 밤늦은 시간 10~11시경까지 웃고 떠들며 매우 소란스러운 소음을 냈습니다. 이사 오기 하루 전날에도 아래집 여자가 새벽 5시경에도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화장실 청소를 했습니다.
- 신청인의 딸, 플롯에 관한 악기 연주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먼저 대면하거나, 그것에 대해 먼저 불만이나 항의를 한 적이 없었으며,

1월 초경 신청인이 저희 집에 직접 방문하여 플롯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고, 저희도 코로나로 인해 자녀들이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플롯 소리가 수업에 피해가 된다는 사정을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신청인은 자신의 딸이 일주일에 3번 2시간씩 1년을 집에서 레슨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전부터 신청인의 딸은 플롯을 불며 녹음된 음악소리를 재생하는 등 생활하기 힘들 정도의 소음을 냈습니다.

- 신청인의 배우자는 적은 의견서의 내용과 같이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해 수시로 사람들을 우르르 집에 데리고 와 웃고 떠드는 등 괴음을 냈습니다. 아랫집에 사람이 방문했는지 자연스레 알 수 있을 정도로 심한 소음을 일으켰습니다.
- 또 늦은 새벽 시간에 설거지와 화장실 청소를 하는 등 소음을 일으켜 저희는 낮에도 밤에도 하루종일 괴로움에 시달렸습니다. 신청인은 본인이 늦은 시간에 설거지와 화장실 청소를 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에게 스테인레스 통을 플라스틱 통으로 바꾸라고 했다고 저희 집에 방문했을때 이야기했습니다. 방문했던 같은 날 신청인은 본인의 집은 밤 12시가 넘어 잠들고 오후 12식 넘어야 일어난다고 오직 본인만 일찍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샤워기 켜는 소리가 다 들린다고 이야기해서 서로 밤 10시 이후에는 조심하자고 했습니다.
- 하지만, 바로 다음 날 새벽부터 신청인의 배우자는 화장실 타일 바닥, 베란다 타일 바닥에 유리나 냄비 등을 덜그덕거리며 싱크대 거름망을 낮과 밤 시간을 가리지 않고 수시로 털어내는 등 소음을 내고 밤 9시 이후 화장실 청소를 하는 척 세면대나 변기 등 도기 재질을 두드리며 늦은 새벽까지 물을 장시간 틀며 생활 소음인 척 계속 소음을 냈습니다.
- 4월 10일경 지인을 데리고 와 거실의 창문을 열고 위층인 저희 집을 향해 야 나와봐 나와봐 소리 내봐 하니 신청인 배우자가 하지 말라고

말리기까지 했습니다, 혼자 있는 피신청인 배우자에게 공포심을 유 발하였습니다.

- 현재 피신청인의 거주지에는 거실 바닥 전체에 매트를 다 깔았으며, CCTV를 설치해 상시 녹화하고 있습니다. CCTV를 보면 저희 집은 빈집인데도 불구하고 쿵쿵거리고 사람의 말소리 등 알 수 없는 소음이 녹음 녹화되어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현재 거주하는 건물은 너무나 소음에 취약합니다. 옆동에 서도 소음 문제가 있습니다. 화장대 위에 화장품을 올려놓는 소리가 다 들릴 정도로 방음이 안되었으며, 여러가지 소음으로 인하여 경찰에게 수시로 신고하였습니다. 결국 전세를 주고 이사를 갔던 일도 있습니다. 또 현재 저희 층뿐만 아니라 윗집 생활소음(코 고는 소리, 문 여닫는 소리,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 전화 통화 소리 등), 아이가 뛰는 소리가 다 들려 고통받고 있습니다.
- 이렇게 방음이 취약한 건물에서 아랫집의 플롯소리는 바로 옆에서 들리는 것처럼 아주 잘 들렸습니다. 본인들에게는 악기 연주소리로 들려겠지만 방음이 되지 않은 건물에서의 플롯소리는 고통스러운 소음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2. 사실조사 결과

가. 분쟁지역 현황

○ 분쟁지역은 일반주거지역으로 주변으로 상가 등 사업장과 주택이 혼재되어 있으나, 생활소음원의 영향이 작은 비교적 정온한 환경이다.

나. 당사자 주거 주택 현황

○ 주 택 명 : ○○주택

○ 위 치: ○○구 ○○로(○○동)

○ 용도지역 : 일반주거지역

○ 연 면 적 : 1,569*m*²

○ 규 모 : 지상6층

○ 용 도 : 도시형생활주택(다세대주택)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 사용승인 : 2012. 7.13.

3.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 신청인이 제출한 층간소음 측정자료 및 현지조사 등 사실조사로 층간소음이 신청인 주거생활에 미친 영향을 판단하였다.

○ 층간소음 측정결과

- 일 시: 2022. 4.22.(금) 16:30 ~ 4.23.(토) 16:29

- 측정기관 : 환경보전협회

- 측정장소 : 거실

- 측정구분 : 직접 충격소음 분석

- 배경소음 : 주간 30 dB(A), 야간 30 dB(A)

〈표1〉1분 등가소음도(LAeg)

구 분		주 간 (06:00~22:00)	야 간 (22:00~06:00)	비고	
등가소음도 dB(A)	시간	1분	1분		
	기준	43	38		
	측정치 (일시)	51 4.23 (07:08)	30 4.22(23:22)		

〈표2〉 최고소음도(LAFmax)

구 분		주 간 (06:00~22:00)		야 간 (22:00~06:00)		비고
최고 소음도 dB(A)	기준	57	초과횟수 (3회/시간)	52	초과횟수 (3회/시간)	
	측정치	67	(4.23. 07:07)	44	(4.22. 22:38)	
		65	(4.23. 07:08)	44	(4.22. 23:22)	
		76	(4.23. 07:09)	40	(4.23. 00:08)	

4. 판 단

- 당사자 주거 주택은 2012년 7월 사용승인 된 다세대주택으로 내부 건축자재가 소음에 취약하게 건축되어 사소한 움직임이나, 가재도구 사용에도 소음이 전달되는 구조의 건축물이며, 공동생활 공간의 특성상 소음의 전달경로 파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 또한 당사자 주거지역은 교통소음의 영향이 덜하고 배경소음도가 낮은 시간대는 상대적으로 주택 내에서 발생되는 낮은 소음도 그대로 층간으로 전달되는 주거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의성이 없는 일정 부분의 층간소음을 수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충간소음도 직접 충격소음 측정결과 1분 등가소음도는 51dB(A), 최고소음도는 76dB(A) 주로 출근시간인 주간에 수인한도를 초과하 였으나, 당사자 모두 거주 건물이 소음에 취약한 건축물이라고 여기 는 점, 발생소음을 피신청인이 유발한 소음이라 특정할 수 없는 점 및 매트 설치 등 소음저감을 위해 노력한 점, 고성과 폭언 등의 공기전달 소음은 측정자료가 없으나, 당사자 간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의 표현보다 감정적인 언행으로 당사자 모두가 공동의 주거생활 피해자인 점을 감안하여 신청인의 정신적 피해여부의 개연 성을 판단하기 보다는 앞으로의 새로운 주거환경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보금자리 삶을 위하여 서로의 소중한 생활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주의 깊게 주거생활을 할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5. 결 론

○ 본 위원회에서는 현지 방문결과, 관련서류, 유사 사건의 피해배상 사례 및 당사자의 주장과 진술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